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가점 부여 의무화 등(안 제14조)

(1)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한
임용령 개정('23.6.13) 사항 후속 반영

(2)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임용령 및 평정규칙에 기 반영된 교류경력
가산점을 연구·지도직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 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u>5년</u>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 ----- <u>3년</u> -----.
②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략)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 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다만, <u>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 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 <u>종사한 경력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u> ----- --
4. · 5. (생략) <신 설>	4. · 5. (현행과 같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

③ ~ ⑤ (생략)	<u>직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